#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도재준 의원 대표발의)

발의년월일 : 2017.11.17. 의안 번호 발의의 원 : 도 재 준 의원

김 의 식 의원 신 원 섭 의원 이 재 화 의원 조 재 구 의원 최 옥 자 의원

#### 1. 제안이유

- O 대구시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해 운동경기부를 창단하고, 체육회에서 위탁·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프로구단 또는 실업구단이 전무하거나, 저변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의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각급 기관과 단체로 하여금 운동경기부 창단을 유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책의 추진이 필요함.
- O 따라서,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법인과 단체의 전문체육 진흥활동에 대해 대구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등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# 2 주요내용

- 가. 전문체육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,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, 지원에 대해 중복규정된 조항을 정비함. (안 제20조제1항 및 제3항)
- 나.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사업에 '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'을 명시하여, 직장실업팀 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. (안 제20조제2항)

#### 3. 참고사항

- 가.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, 관계법령
 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10조
  - -「지방재정법」제17조
- 다. 예산조치 : 협의완료

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법인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전문체육 관련 단체와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

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경비의 지원)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 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	제20조(경비의 지원)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법인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<ul> <li>② (생략)</li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</li> <li>3. ~ 7. (생략)</li> </ul>	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2. 전문체육 관련 단체와 전문체육 직장 운동         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        3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대 구광역시체육회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<u>③〈삭 제〉</u>

## 관계 법 령

#### 【국민체육진흥법】

- 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·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
- 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 자를 두어야 한다.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지도·감독한다.

#### 【지방재정법】

-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-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~ ③ 생략